

의안번호	제 566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0년 10월 30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6
----------	-----

제출연월일 : 2020년 10월 30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기관 명칭을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서 “재단법인 충북 과학기술혁신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제명 변경
- 사업 범위 확장 및 구체화, 조항의 체제 정비 및 용어·표현정리

##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안 제명)
  - 제명을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지역 산업육성, 과학기술 진흥 및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사업범위 확장 및 구체화(안 제4조)
- 기본재산 조성에 차입금과 수익금 추가(안 제5조)
- 출연금 등의 운영 및 집행 상황 등을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하는 근거 마련(안 제8조)
- 조항의 체제 정비 및 용어·표현 정리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 6. 비용추계서 : 붙임

##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과학기술진흥 촉진과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을 설립하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산업”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방송통신산업”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산업을 말한다.

5.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6.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7. “콘텐츠산업”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8.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 “첨단중소기업”이란 제8호의 중소기업 중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개발 또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1.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제3조(법인격 및 명칭) 법인격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하 “과기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사업) ① 과기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산업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2. 국가과학기술혁신 지원과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방과학연구 단지 조성 및 운영
3.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지원단 운영 지원
4. 지역 과학기술연구개발 기획·조사·성과분석·평가 등 정책연구

5. 전(全) 주기적 창업활동 지원
  6. 첨단산업 기술진흥, 산업·기술 간 융합 인프라 구축 및 지식재산권 지원
  7. 지식·소프트웨어·정보통신·방송통신·문화·관광 및 콘텐츠산업 육성·진흥사업
  8. 국가, 도, 시·군 또는 관련 기관·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중소기업, 첨단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진흥사업
  9. 그 밖에 과기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과기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와 시·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
2. 국가의 출연 또는 지원금
3.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와 기업체, 대학, 후원인 등의 출연금
4. 그 밖의 차입금과 수익금

제6조(재정지원 및 공유재산의 대부)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과기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과기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과기원의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이나 시설 또는 업무를 과기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으로 발생하는 소요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소요경비에는 사업 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과기원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적인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기원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경영의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와 과기원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운영 및 집행 상황 등을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과기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은 이 조례에 따른 과기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의 행위나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과기원의 행위나 과기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공보관 위탁 대상기관란 중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을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바목 중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을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을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으로 한다.

## 관련법령 발취

###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 직공무원,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파견 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중소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충청북도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의 중추기관으로 도약하고자 기관 명칭을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에서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으로 변경
- 사업 범위 확장 및 구체화, 조항의 체제 정비 및 용어·표현정리

## 2. 비용 발생 요인

- 기관명칭 변경에 따라 간판·안내판·표지판 등 교체, 기관 CI 개발, 홈페이지 정비 및 전자결재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필요

## 3. 관련조문 : 해당없음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기관명칭 변경에 따라 간판·안내판·표지판 등 교체, 기관 CI 개발, 홈페이지 정비 및 전자결재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 나. 추계 결과

- 각종 간판 등 교체 : 28,280천원
- 홈페이지 재정비 : 50,000천원
-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 45,000천원

###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출연금)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6. 작성자 : 신성장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김 상 규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계		123,280	-	-	-	-	123,280
본관 캐노피 간판		11,760	-	-	-	-	11,760
본관 기관 현판		1,000	-	-	-	-	1,000
건물외벽현판설치		5,520	-	-	-	-	5,520
본관,별관호실표찰		6,200	-	-	-	-	6,200
기타 시트지교체		3,800	-	-	-	-	3,800
홈페이지 재정비		50,000	-	-	-	-	50,000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45,000	-	-	-	-	45,000
<b>재원 조달</b>							
자체 수입	소 계	123,280	-	-	-	-	123,280
	도비(출연금)	123,280	-	-	-	-	123,280